

同和地區 사례로 본 피차별부락지역의 포섭적인 지역 재생을 위한 실천연구

Action Research on Inclusive Community Regeneration in Dowa Area, a Social Disadvantaged Community

전홍규¹

Hong-Gyu Jeon¹

(Received April 11, 2016 / Revised April 28, 2016 / Accepted April 29, 2016)

요 약

이 연구는 도시 내의 특정 지역으로의 사회적인 불리의 집중에 의한 지역 효과와 관련된 서구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이론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지역의 실태조사를 분석하여 '사회적 불리지역'의 실태와 거주자의 필요를 동정(同定)함과 더불어 이 결과에 근거하여 보다 포섭적인 지역재생을 위한 과제를 모색해 보았다. 조사에서는 지역의 고령화와 저소득층의 지역적인 집중이 심화되어 지구내의 커뮤니티 믹스에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는 경제적인 면과 건강면에서의 불안을 들 수 있으며, 향후 필요로 되는 복지서비스로서는 주택관련 상담과 건강, 가사서비스 등, 주민의 고령화에 수반하여 필요로 요구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의 고령화와 저소득층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수반하여 지역이 다양한 과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화대책 관련법이 효력을 상실한 현재, 이들 지역의 과제와 필요에 대한 대응으로, 공적인 지원에 더하여 지역 주체의 대응, 즉 지역 주체에 의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수립해갈 필요가 있다.

주제어 : 포섭형 지역재생, 사회적 불리지역, 동화지구

ABSTRACT

This research is about local impacts of concentrated social disadvantage in a specific urban district, and is discussing these issues by focusing on previous research from Western countries. Further, by analyzing the results of a field survey conducted in this district, I am clarifying the reality of socially disadvantaged areas and the needs of their residents, while seeking results supporting a theory of inclusive area revitalization. With this survey I could verify that the aging of local residents and the concentration of low-income population is increasing, and in this district an unbalanced community mix is becoming apparent. Currently, insecurities concerning economic and health aspects are the most serious issues. In response to the residents' needs counseling on housing issues and social services, that become necessary with advancing age, like health services or housing support, are increasingly required. Since today laws for antidiscrimination (namely, Dowa) measures are outdat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munity based approach or a neighborhood based governance model, in addition to the existing public support, as response to these local challenges and needs.

Key words : Inclusive Community Regeneration, Socially Disadvantaged Community, Dowa Area

1. 서론

현대 사회는 도시화가 한층 진행되어 감에 따라, 빈곤의 소재가 도시로 이동하는 '빈곤의 도시화(Urbanization of the poverty)'라고 인식되는 프로세스가 주목을 모으고 있다. 이 중에서도 도시 내의 '사회적 불리 요소'의 집중에 초점을 맞춰, 이와 같은 집중과 관련된 메커니즘으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지역

의 역동적인 역할과 효과에 지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역을 통한 다양한 불이익에 대한 대응은 배제 현상에 대응해 가기 위해 빠질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요소들이 집중하는 지역에서의 거주계층에 대해 야기되는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선행연구에서 검토할 터이지만, 이와 같은 문제와 긴밀히 관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지역 효과'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본문에서 상세히 검토

1) 오사카시립대학교 교수(교신전자: choiey6012@gmail.com)

해 보겠지만, ‘지역 효과(area effects)’란, 특정한 지역에 생활함으로써 인해,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全泓奎, 2015).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배경으로, 지역 효과에 의해 사회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된 지역을 ‘사회적 불리지역(Socially Disadvantaged Areas)’라고 정의하여, 해당 지역에 있어서 빈곤과 사회적배제와 결부되는 지역 효과를 확인함과 더불어, 이와 같은 프로세스로의 이행을 단절시키기 위한 지역 재생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본다.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사회적배제론에 근거하여, 특정한 지역의 배제 현상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지역 효과와 관련지어 검토한다. 그 후, 이들 이론적 틀에 근거하여, 일본의 대표적인 사회적 불리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피차별 부락지역’, 이른바 동화지구(同和地區)에 대한 거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실태와 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조사대상 지역의 개요

본 논문은 이상과 같은 문제 의식에 근거하여, 오사카시내의 피차별 부락지역인 A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A지역은 오사카시 S구의 남부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1965년에 피차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당사자조직으로 부락해방동맹 A지부를 결성한 것을 출발로, 지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요구투쟁을 비롯하여 지역 내에 설치되어 있던 오사카시영지하철 차고지 철폐운동을 전개해 왔다. 그 후 오사카시와의 교섭을 통해 차고지를 철거하게 되면서 커뮤니티 주도의 마을만들기를 전개해 온 지역이다. 이들 마을만들기 활동은 톱다운식의 계획 집행이 아닌, 철저한 주민참여에 기반한 마을만들기를 원칙으로 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수행한 포섭적(包攝的)인 지구 마을만들기로서 실천되었다. 현재는 오사카시의 재정난을 이유로 2010년에 제정된 조례로 인해, 지구내의 중요한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이었던 ‘인권문화센터(구 해방회관, 隣保館)’, 노인복지회관, 장애인회관을 통합(3관통합)하여 한 곳의 시설(시민교류센터)로 집중시켜 운영해 왔으나, 이 센터도 올 4월부터 폐쇄되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2011년에 실시한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지역 불리의 실태와 주민 의식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지역 조사는 필자의 연구실이 사무국을 맡아 진행한 조사이자, 이들 조사 결과에 근거한 지역 재생을 위한 실천은 현재에도 계속 과제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조사방법으로는 질문지조사만이 아니라 질적조사방법으로 라이프히스토리 조사(생활사조사)를 병용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지역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함이고,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해 들음으로써 이들의 생활 세계의 지속과 변동과정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谷富夫編, 2008)이기 때문이다. 특히 라이프히스토리 조사법은 다문화 이해와 피차별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검토를 수행하는 데에 유효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3. 선행연구의 검토

3.1 사회적 배제에 있어서 지역의 역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의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연구와 정책 분야에서는, 도시 내의 사회적인 불이익의 집중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특히, 사회적 배제의 역동적인 특성에 있어서 지역의 역할에 무엇보다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사회적 배제’란, (도시)사회에 있어서 참가의 결핍에 대응하기 위한 규범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사회적 배제는 도시에 국한된 문제라고 보기 어렵지만, 특히 도시에 있어서의 사회적 배제에는 특정한 지역으로의 사회적 불이익의 집중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Lee, 1998; Atkinson and Kintrea, 2001; Murie and Musterd, 2004). 사회적 배제는 사람들이 완전한 시민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이익으로부터 점차 멀어져 가는 역동적인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Walker and Walker, 1997: 8), 사회적 불리가 집중하고 있는 지역의 거주자는 무엇보다도 시민적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결과에 처하기 쉽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거주분야에서 사회적 배제의 한 측면으로는 불이익을 입고 있는 세대의 공간적인 집중에 대한 문제와, 이로 인한 사회 참가에 대한 제약과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낮게 하는 장소의 문제, 즉 지역의 역할에 관한 문제를 수반한다. 한편, 빈곤지역과 관련한 논의 중에는 이러한 문제가 특정한 점유형태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주장(Somerville, 1998)도 제기되고 있어, 사회적 배제의 프로세스는 다양한 유형의 점유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적 배제에 있어서의 점유형태를 넘어서 지역의 역할에 대해 더욱 주목이 필요한 것이다.

기존 문헌에서는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는 세대의 공간적인 집중이 반드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즉, 불이익 세대와 같은 동질적인 사회적 집단의 집중이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가족과는 상이한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다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사회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제약 등으로 인해, 지역 거주자의 사회 참가와 사회적 제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의 제약은 사회적 배제를 가중시키는 기재로서 기능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어 다차원적인 사회적 불리의 집중으로 인한 지역의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최근에는 사회적 배제에 있어서 지역의 역할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이 교육, 고용, 건강, 주거환경과 같은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2 ‘지역 효과(Area Effects)’를 둘러싼 논의

‘지역 효과’란, 어느 특정 지역에서 생활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生)’의 기회에 대한 기회의 네트워크로서 정의할 수 있다. 기

존 문헌 중에는 근린 효과(neighbourhood effects)로서 소개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한 지역에서의 생활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경제적 기회에 대한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효과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의이다(Atkinson and Kintrea, 2001: 2002). 또한 박탈과 사회적배제론만이 아니라, 사회정책과 도시정책에 있어서도 널리 보급되어 있는 아이디어이기도 하다(Atkinson and Kintrea, 2004). 지역 효과는 본래 미국에 기원을 둔 개념으로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에 의해 제시된 '언더클래스(Underclass)'의 존재와 인종적인 차별보다도, 박탈된 이너시티 지역에 대한 보다 정교한 설명을 찾고자 하는 접근법이었다(Wilson, 1996).

따라서 Bauder(2002)가 지적하고 있다시피, 지역 효과에는 빈곤 지역이 규범과 가치,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기능부전(dysfunctional)' 상태에 처해 있음을 의미하여 이와 같은 아이디어는 도시의 언더클래스 개념에 더 강하게 결부되어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이들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어 왔지만, 주택도시개발성(HUD)에 의한 'Moving to Opportunities'라는 파일로트프로젝트와 'Section8'주택수당을 사용하여 140만 명의 저소득세대를 중산층지역과 교외지역으로 이주시키는 프로그램 등이 실행되었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은 교외의 중산층의 생활스타일은 정상적인 것이고, 이너시티와 마이너리티의 생활스타일은 병리적(病理的)이라는 가설을 함의하고 있었다(Bauder, 2002: 89). 따라서 '지역 효과'라는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는, 이 용어가 함의하는 문화적인 배제의 개연성을 항시 경계해가면서 사용해야 하며, 특히 정책결정자와 지역의 사회복지사와 계획가들은 항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한 지역 효과는 개인과 세대의 사회적 경제적 퍼포먼스에 있어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양측면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를 간단히 도표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즉,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양질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고용, 의료, 건강, 문화, 물리적인 거주환경 등 다양한 기회의 사슬과 연결되어 거주자의 질과 인적 자원에 있어서 향상되는 한편, 한정적인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외부 사회와의 연계가 희박해져, 이속고 사회적폐쇄(social closure)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고용과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접근 곤란, 열악한 물리적 환경 등으로 인해 생의 기회로부터도 서서히 멀어져가는 경우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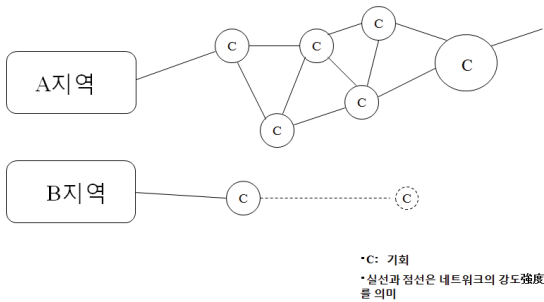


그림 1. 지역에 있어서의 기회의 네트워크

일반적으로 '지역 효과'와 관련된 문헌에서는 주로 미국의 도시에서 빈곤층이 이들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저해하는 부가적인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소규모 지역에서의 도시빈곤의 집중으로 인한 공핍상황에 관하여 주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가적인 영향에 대한 메커니즘은 지역의 서비스 공급에 대한 부담, 거주자 개인에 대해 투영된 나쁜 평판, 민간의 서비스가 질적으로 열악하거나 부재한 점, 수준이 낮은 공공서비스 공급과 빈곤 지역에 있어서의 사회화 과정 등의 프로세스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역 효과와 관련된 미국의 문헌으로부터는 빈곤층의 장기적인 목표의 상실, 일탈적인 규범과 행위의 강조(Murray, 1996), 이들 거주지역의 사회적인 고립, 중산층의 부재로 인한 역할모델의 결여(Wilson, 1987; 1996), 그리고 권능을 부여(enabling)하기 보다는 억압적인 사회관계자본(social capital)의 발전(Xavier, 1998)등이 초래하는 영향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밖에도, 충분한 재정투입의 부재로 인해 열악한 서비스의 질을 초래하여, 교외지역에서는 새로운 일자리의 접근성을 감소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다(Wilson, 1996). 한편, 불평등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역 효과보다도 다른 요인, 즉 빈곤의 집중을 초래하는 거시경제학적인 구조적 요인이 특히 중요하다는 비판도 있다(Kleinman, 1998; Webster, 1999). 특히, 실업이 직접적으로 가족 해체와 빈곤 등의 사회문제를 초래한다는 의견도 있다(Webster, 1999). 이밖에도 Kleinman(1999)은 가족과 개인의 특성이 지역 효과보다 중요하며 정책개입의 우선적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런던의 일부 지역에서 실업률이 국가 평균보다 높은 것은 실업과 관련된 특성을 갖는 세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여 지역 효과의 영향을 왜소화시키고 있다. 나아가 Kleinman은 박탈된 사회적 불리지역에 있어서 높은 실업률에 있어서는 지역으로의 빈곤의 집중과 경제와의 관련성에 주목해야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빈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은 지구화에 의해(by globalization)배제된 것이 아니라 지구화로부터(from globalization) 배제되어 있다고 주장하여(Kleinman, 1998), 지역 효과의 영향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효과에 대해 논하고 있는 문헌 중에는 거시경제적인 힘에 의한 결과와 세대의 특성보다도, 빈곤 지역과 다른 사회문제간에 있어서 인과적인 관계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Brooks-Gunn et al., 1993; Ellen and Turner, 1997; Arthurson and Jacobs, 2003). Ellen and Turner(1997)는 지역 효과는 지역 외부의 프로세스보다는 중요성이 낮을지도 모르지만, 이들 외부 프로세스와의 인과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한층 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여 지역 효과에 대한 유효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특히 빈곤 지역과 사회적 배제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진지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다수의 논자들이 주장하고 있다(Somerville, 1998; Power, 2000; Brooks-Gunn et al., 1993; Ellen and Turner, 1997; Arthurson and Jacobs, 2003). 또한 거시경제적인 영향과 관련해서는, 박탈된 사회적 불리지역은 경제성장

이 이어지던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었기에, 개인과 세대에 대한 생의 기회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을 여기서 찾고자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Atkinson and Kintrea, 2002). 영국정부는 ‘금후 10~20년내에 누구나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의해 심각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보고서를 간행한 바 있다(Social Exclusion Unit, 2001). 1997년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는 단지와 공공정책이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지역에 초점을 맞춰왔다. 새로운 중심사업으로서 특히 부서간의 공동작업과 광범위한 파트너십에 근거한 ‘제휴된 해결책(joined-up solutions)’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된 일련의 ‘지역에 근거한 우선사업(area-based initiatives, ABIS)’이 발표되었다. 그 일환으로서 1998년 이래, New Deal for Communities(NDCs)프로그램이 실시되어 잉글랜드 전역에 39 거점을 설치하여 지역재생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또한, 스코틀랜드에서도 Social Inclusion Partnerships(SIPs)프로그램이 빈곤층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여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34지역에 이른 바 있다(Atkinson and Kintrea, 2002). 2001년에는 ‘부수상실(Deputy Prime Minister's Office)’ 직할로 ‘지역재생국(neighbourhood renewal unit)’이 설치되어 박탈된 사회적 불리지역에 집중적인 시책을 실시하였다. 특히, 박탈된 사회적 불리지역에 대해, 지역 커뮤니티의 안전, 경제적인 개발, 고수준의 교육과 건강프로그램, 그리고 적절한 주거(decent housing) 등을 목표로 내걸고 시책을 전개하였다. 즉, 지역 효과와 사회적 배제 관련 논의는 이미 시책으로서 실천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어, 사회적배제에 있어서 지역 효과 메커니즘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3.3 박탈된 사회적불리지역에서의 지역 효과의 메커니즘

지역 효과의 유형으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과 특징이 소개되고 있다(Kempen, 2002; Atkinson and Kintrea, 2001; Ellen and Turner, 1997).

첫째, ‘입지와 빈곤의 집중’에 의한 효과이다.

‘빈곤의 집중’으로 인해, 어느 특정한 지역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부하가 발생하여 거주 세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Wilson은 ‘집중효과(concentration effects)’ (Wilson, 1987)라고 하여, 공공층이 압도적으로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기회의 제약’이라고 논하고 있다. 이로 인한 영향으로서, 교육적인 성과와 건강 등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2차적인 효과와 더불어 지역과 거주자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불리의 강화를 창출하게 된다. 특히 지역의 영향이 가장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경제적인 기회, 즉 일자리와 관련된 물리적인 근접성과 접근가능성이다(Ellen and Turner, 1997).

환언하자면, 거주지역의 ‘입지’가 일자리 기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공공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이들이

기술과 의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적절한 일자리를 얻기 어렵게 된다. 또한, 빈곤과 사회적불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과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한 좋지 않은 평판과 스티그마를 낳는 경우도 있다.

지역에 대한 이와 같은 ‘라벨링’은 단순히 주류 사회에 대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주관적인 이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회적배제의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다. 지역에 대한 스티그마의 예로서는, 거주지의 주소에 의해 고용시장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자주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라벨링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저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는 드문 편이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고 있으며, 또한 행정도 이와 같은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대한 스티그마는 사회적 배제의 프로세스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Kempen, 2002).

둘째, ‘서비스’와 관련된 효과이다.

개인의 복리(well-being)는 지역 수준에서 공급되는 서비스의 질과 그 이용 가능성으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입게 된다. 나아가 이로 인한 결과는 개인이 창출하는 성과에도 큰 영향을 준다. 한편, 빈곤 지역에 대한 공공과 민간에 의해 공급된 서비스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실제의 서비스 질과 내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빈곤 지역이 질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으며, 심지어 빈곤 지역에서는 거주자간의 빈곤과 이동성의 제약으로 인해 그 부정적인 영향이 한층 강화되며 지속되고 있다는 실태가 밝혀진 바 있다(Speak and Graham, 1999).

Kempen(2002)은, 예를 들어 동질적인 사회적 집단이나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이 동일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과밀(crowding)’문제가 발생하므로, 특히 빈곤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부득이하게 대기과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등,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를 빈번하게 경험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가장 비근한 예로, 빈곤 지역에서의 교육과 관련한 문제를 들 수 있다. 빈곤지역의 경우, 아동 교육과 관련한 시설과 교육서비스의 낮은 질과 이들 이용가능성에 있어서도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동들에 대한 불충분한 관심과 배려로 인해 장애에 대한 전망을 세우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심지어 가정 상황이 어려운 학생들은 부등교와 가출, 집단 이지메, 폭력 등의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가정과 학교, 지역 사회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 하고 비교육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점과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보육에 관한 욕구를 강하게 갖고 있지만, 이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은 제공되지 않고, 심지어 자력으로 이를 조달하기 위한 교육비의 부담도 무거운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시설도 재정이 취약하므로 노후화가 심화되어 교육용 설비와 용구의 부족, 교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저소득층 지역의 교사들은

업무 부담등으로 인해 학생들과의 접촉기회가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있다.

질 좋은 의료에 관한 접근 가능성도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준다.

보건과 의료 관계 시설이 부재하거나, 혹은 거주지가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 질병에 걸린 경우, 학교와 일을 장기간 쉴 수밖에 없다. 또한 천식과 당뇨병 등과 같은 만성적인 질병이 있는 경우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다른 지역이라면 충분히 영위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생활이 지역성으로 인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사회화 및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한 효과이다.

사회적 지원과 경제적인 기회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이들 네트워크는 지리적 조건에 근거하고 있다.

농밀한 지역사회네트워크의 존재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안심감과 정보와 자원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지역 네트워크는 문제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거주자에 있어서 적절한 임금을 받는 직장에 근무하는 이들이 드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은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곤란해진다.

또한 이와 같은 효과는 취업 기회로부터 분리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박탈된 사회적 불리 지역에서는 그들/그녀들이 일자리를 얻게끔 도움이 될 수 있는 ‘피고용자들’과 교류를 갖을 기회 자체가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지역에 근거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지역의 경계를 넘은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계 여하와 관련된다. 거주 지역을 넘은 강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이는 친근한 환경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이다. 확장된 네트워크를 통해, 이들은 정보와 서비스, 기회와 지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역의 범위를 넘어서 확장된 네트워크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는 오히려 지역내부의 서비스와 지원에 크게 의존하게 될지도 모른다 (Ellen and Turner, 1997). 그 결과, 지역외부와의 네트워크가 취약한 개인과 세대는 지역 효과에 의한 폐해를 더 한층 겪게 되는 것이다.

빈곤의 집중과 사회화와 사회적 네트워크와 관련된 논의에서 중심이 되는 용어는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이다(Kempen, 2002). 또한, 사회적 고립은 지역 효과를 발생시키는 데에 중요한 상황으로 간주된다(Atkinson and Kintrea, 2004). 사회적 고립은 물리적, 혹은 질적인 고립과는 상이한 형태로 경험된다. 가령 지역적으로는 잘 통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에서의 다른 활동 분야로부터는 떨어져 있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이다. Atkinson and Kintrea(2004)는 고립된 빈곤 지역에서는 대체로 세 가지 기제가 기능한다고 지적한다. 첫째로, 고립은 빈곤지역에 상이한 형태의 사회관계자본(social capital)을 이끈다는 점, 둘째, 지역의 곳곳에 빈곤이 미치고 있는 지역에서의 사회화 프로세스는 거주자의 기대와 패기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점(예를 들어 Wilson이 지적

하는 ‘역할 모델(role model)’의 결핍(Wilson, 1987), 셋째, 거주지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이들과 연계됨이 없이, 지리적으로 제한된 사회적 네트워크에 머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편, 지역 효과 어프로치가 다른 사회와 경제일반, 정책적인 문맥과는 독립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도 문제이다. 즉, 지역이 관계하고 있는 제반 영역과의 관계성을 시야에 들 필요가 있다. 도시의 경제력은 지역 문제를 개선하거나 악화시킬 수가 있으며, 지역을 초월한 공공정책은 특정한 지역에 근거한 사업보다도 더 한층 거주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광범위한 맥락에 있어서 지역 효과를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지역 효과의 함의와 사회적배제와의 관계성을 파악해감에 있어서의 유효성, 그리고 사회적배제를 초래하는 다양한 메커니즘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지역 효과는 다양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중에서도 ‘(입지/빈곤의)집중 효과’, ‘서비스 효과’, ‘사회화/사회적 네트워크 효과’ 등 세 가지 유형을 가장 주된 것으로 들 수 있다. 아래 도표는 이들 효과가 거주 빈곤과 결부되는 영향 관계를 정리해 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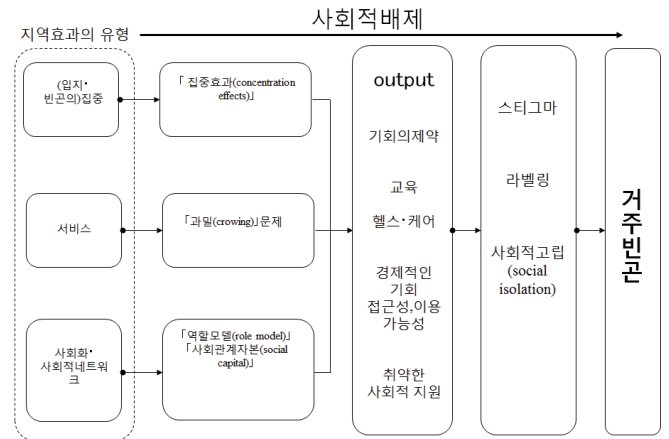


그림 2. 지역 효과와 사회적 배제의 관계도

이상에서 검토해본 지역 효과와 관련하여 지역에 있어도 사회적 포섭과 배제의 성격을 사회와 결부시켜서 생각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은 유형화가 가능하다.

표 1. 사회적배제/포섭과 관련한 지역의 유형

지역	포섭	사회	
		포섭	배제
	포섭	1	2
	배제	3	4

* 주: Bergman and Phillips(2000)를 재구성

우선, 1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사회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포섭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하여 2의 지역이란 사회적으로는 배

제, 즉 사회의 제도와 조직과의 관계성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지역적으로는 포섭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지역의 농밀한 네트워크 등에 의한 결속형의 지역을 상정할 수 있다. 또한 그 반대로 3에 해당하는 지역은 사회적으로는 포섭되어 있지만, 지역에 있어서는 배제되어 있는 지역으로 위 맥락에서 말하자면, 사회적인 제도와 조직에 대해서는 보다 포섭되어 있지만, 지역 그 자체에 있어서는 배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4에 해당하는 지역은 사회의 제도와 조직, 그리고 지역으로부터도 배제되어 있는, 이른바 극한적인 배제 상태에 처해 있는 지역을 나타내고 있다.

4. 사회적 불리지역으로서의 지역 특징과 주민 필요

본 절에서는 이상과 같은 지역 효과와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일본의 대표적인 사회적 불리 지역으로서의 피차별 부락 지역을 검토해 본 후, 주민의 필요와 관련하여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4.1 오사카시내 피차별 부락 지역 A지구의 조사를 통해 본 지역 특성과 주민의 필요

우선 지역 주민의 기본 속성에 대해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에 실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전에 비해 가장 특징적인 점으로 단신 고령자의 증가를 들 수 있다.

2010년의 국세조사 기본 집계(총무성 통계국)를 보면, 오사카시의 단신 또는 고령자 부부 세대의 비율은 21.3%(전국 19.4%)로, 이 중 단신 세대의 비율은 오사카시 13.5%(전국 9.2%)이다. 2011년 조사에서 확인된 A지구의 30.9%는 오사카시의 수치를 훨씬 넘어서, 2000년 조사(17.0%)와 비교하더라도 거의 두 배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국세 조사에 따르면, 연령은 오사카시 전체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22.7%를 차지하고 있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A지구의 경우는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의 비율이 56%에 달하여, 오사카시 전체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를 훨씬 상회하고 있었다.

연간 세대 수입은, 2000년 당시와 비교해 보면 200만엔 미만 세대가 37.0%에서 63.0%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약 10년간에 비교적 생활이 양호한 중간층이 지역 외로 유출되어, 고령화 등에 의한 기(既) 거주세대의 소득감소에 더하여 지역의 빈 시영주택을 채우는 형태로 외부에서 저소득층이 다수 유입해 온 결과, 이른바 곤궁층에 의한 하향 필터링 현상을 낳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오사카시 전체와 전국 추세와 비교하더라도, A지구에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 거주자의 실태에 대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영주택의 거주 기간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평균 거주 기간은 18년이지만, 5년 미만 거주세대가 27.2%로, 전체 주민의 세 명중의 한 명은 단기 거주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07년에 일부 시영주택을 재건축한 결과, 지구 내 이전이 발생한 점, 그리고 시영주택의 일반 공모에 의한 지구 외로부터의 신규 입주가 있었던 점 등이 이유로서 추측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영주택의 일반 공모에 당첨되어 지구 외로부터 전입해 온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에, 약 20%의 세대가 직전 거주지는 지구 외라고 회답하고 있어 신규 유입층이 증가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구 주민에 대한 라이프히스토리조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후레이아주택이라고 해서, 지구외의 사람, 전부, 초등학교 교구 내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시청에 신청해서 입주할 수 있나 봐요. ‘후레이아’로 들어온 이들은 인근 호수가 아닌 한, (얼굴을 마주쳐도) 누군지 잘 몰라요. (K씨, 72세 여성)”. 다음으로 임대료와 관련하여 보자면, 임대료 1만엔 미만 세대가 약 30%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간 세대 소득이 200만엔 미만인 저소득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임대료 5만엔 이상 세대가 2000년대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지만, 이는 1996년의 공영주택법 개정에 의해, ‘응능응익(應能應益)임대료제도(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가 도입되어, 세대 수입에 따른 임대료를 적용하게 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정 정도의 소득이 있는 세대는 비싼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흐름을 낳게 되는 것이다. 비싼 임대료를 지불해 가면서 시영주택에 거주하기 보다는 지구 외의 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보다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들이 입주해 있는 곳은 저쪽의 나가 주택인데요.. 임대료가 비싸요. 지금 공무원으로 있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임대료가 높게 설정이 되어서.. 8만, 9만,, 납부하거든요. 그럼, 그리 비싸게 납부하기보다 (인근에 집 사서 월부로 갚아가는 편이 낫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역 외로 나가버렸어요. 수입이 괜찮은 젊은 층들은 모두 지역 외로 떠나버려요(K씨, 72세 여성)”.

이처럼 동화대책사업법이 효력을 상실한 후, 일반시책으로서의 이행에 수반하여, 지구내의 시영주택에는 지구 외로부터의 전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견층의 지구 외로의 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 현재의 거주자의 거주 의향에 대해서는 약 70%가 앞으로도 현재의 시영주택에 거주하고 싶다고 회답하고 있다. 계속 거주 의향의 이유로는 ‘정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회답이 가장 많아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많은 이유가 ‘지인/친구/친척이 가까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가 15.7%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이유로 ‘상점과 병원, 역 등이 가까이 있어서 편리’하다는 이유를 합친 적극적인 이유가 67.5%이었다.

한편으로는, ‘이사 자금이 부족’, ‘이주를 준비할 체력이 부족’, ‘살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등의 소극적인 이유도 24.0%로, 지구 주민의 고령화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고령화의 영향이 배경에 있어서인지, 만약에 이주하게 된다면 어떠한 주택이 좋은지를 조사해 본 결과, ‘공영주택’이

50.9%로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 조사 시에는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이 52.5%로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하자면, 이번 조사에서는 자가 지향이 줄어들어 공영주택으로의 정주 지향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로서는 고령화에 수반한 세대 수입의 감소에 따른 공영주택으로의 정주 지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과 비교적 수입이 안정적인 자가 지향하고 있던 세대는 최근 10년간에 공영주택의 임대료가 인상된 것으로 인해 이미 전출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원래의 지역 주민의 지구에서의 거주 배경은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까? 조사 항목에 있던 지구내로의 거주 이유에 대해, 약 40% 가량의 주민은 ‘이 지구에서 태어났기’(42.0%)를 들고 있으며, 다음으로 ‘결혼으로 인해’(15.4%), ‘공영주택에 입주하기 위해’가 8.3%로 이어지고 있다. ‘공영주택에 입주하기 위해’라는 회답과 ‘기타’의 회답으로 ‘추첨에서 당첨되었기 때문’이라는 회답은 아마도 최근 수년 간 지구 외로부터 일반 공모에 의해 신규 입주해 온 세대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된다. 가장 많은 ‘이 지구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지구에 거주하게 된 가장 일반적인 계기라고는 해도 그와 같이 회답한 이의 지구 거주 이유로서는 ‘기타’의 내용에 있는 ‘부득이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갈 곳이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등의 회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원 관련 법률이 효력을 상실한 후, 지역 주민의 고령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로 지역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가 확인되는 가운데, 생활이 곤궁해졌을 때, 상담과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질문해 보았다. 그 결과, ‘가족과 친족’이 60.6%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구청’(21.2%), ‘벗/지인/이웃’(12.0%), ‘해방동맹지부’(11.7%)를 주된 상담 대상으로 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8.6%의 주민은 ‘상담 상대가 없다’고 회답하고 있으며, 일부 고립된 상태에 있는 주민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동화대책특별사업관련 입법에 의한 지구 환경의 개선이 진행되어 주민의 경제 사회적인 지원도 증가하여 세간으로부터는 피차별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회자되어 왔다. 그러나 이상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법률 효력 상실 후, 중견 패밀리 세대의 지구 외로의 유출과 일반 시책으로의 이행으로 인해, 우선순위가 높은 고령단신과 다양한 생활 곤궁을 겪고 있는 세대의 지구 내로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 주민이 안고 있는 곤란과 근심도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조사에 있어서 ‘현재 가장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경제적인 면’이 26.5%로 가장 많았다. 이는 연간 세대수입이 200만엔 미만 세대가 60% 이상이라는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역시 고령화의 경향을 반영한 타인지, ‘본인 및 가족의 건강’이 23.7%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의 회답에서도 ‘다리가 불편하다’,

‘노후가 불안’ 등의 건강면과 경제면을 염려하는 회답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시영주택으로의 높은 정주 의지는 지구에 대한 정주 의지에 있어서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되며, ‘계속 거주하고 싶다’가 90.4%를 차지하고 있었다. 2000년 조사의 결과와 비교하자면, 2000년 조사에서 ‘지금은 아직 모르겠다’고 회답한 층이 이번 조사에서는 ‘계속 거주하고 싶다’, ‘거주하고 싶지 않다’의 양자 택일이었기 때문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를 선택한 것처럼 생각된다. 한편,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회답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가 40.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친척과 벗이 있다’가 18.0%를 보이고 있다.

‘기타’로 들고 있는 ‘나이가 들어 이동이 곤란하다’, ‘갈 곳이 없다’ 등의 의견을 고려하면, 2000년 조사에서 ‘지금은 아직 잘 모르겠다’고 회답한 층이 이번 조사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의 의견으로 전향한 것은, 적극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지구 주민의 고령화 등을 그 배경으로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지구 주민의 필요로서 급후 요구되는 지역서비스에 대해 회답한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민의 필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긴급시에 통보할 수 있는 서비스’(41.1%), 다음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의 상담 창구 서비스’(33.3%), ‘전문 스태프에 의한 단지 관리 서비스’(32.4%)를 각각 지적하고 있었다. 기타 향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서비스에 대해서는 ‘주택상담’(23.4%), ‘건강 향상 지원’(15.4%), ‘청소와 쇼핑 등의 가사서비스’(14.5%)를 지적하고 있다. 2000년 조사와 비교하자면, ‘건강 향상 지원’, ‘생활 동기 부여’, ‘배식 서비스’가 저하하여, ‘주택상담’에 대한 필요의 고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택상담에 대한 필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택, 그 자체의 노후화 대책만이 아니라, 거주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환경에 대한 새로운 필요(손잡이 증설과 단차 해소)와 임대료 부담의 불안감 경감에 대한 상담 등이 생각된다. ‘기타’의 회답으로는 ‘개호보험 서비스 내용의 충실’과 ‘개호보험 시설을 늘려갔으면 싶다’ 등의 제도의 확충을 기대하는 의견에 더하여,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5. 결론: 포섭형 지역재생을 위한 모색

이번 조사를 통해 A지구에서는 고령화의 심화와 저소득층의 지역적인 집중이 진행되어 지구 내의 커뮤니티 믹스에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구 내 주택의 88%가 공영주택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높은 임대료를 이유로 중간층이 지구 외로 전출하는 한편, 공영주택의 일반 공모에 의해 저소득층이 전입하는 경향은 더욱 진전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지구 외로의 이전과 이주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가 확인되어 현재의 공영주택에서의 정주 의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주 의사는 지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나타나 본래 지역 출신자가 높은 것을 배경으로 지역 외에서의 생활 경험이 없거나 적은 주민이 다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사료된다. 이는 추측하기로 지구 외로부터의 차별이라는 외적인 요인과 동화대책사업에 의한 지구 내로의 유인(제도적 포섭) 요인이 결부되어 대부분의 주민이 지역 내에서의 생활에 친숙해지게 된 탓이라고 생각된다. 현재는 고령에 따른 소득의 감소 등에 더하여 지역과 현재의 주거에서의 높은 정주 의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여겨진다.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는 경제적인 면과 건강면에서의 불안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향후 필요로 여겨지는 지역 서비스’로는 긴급시의 통지 서비스와 상담 창구 서비스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요구되는 복지서비스’로서는 주택 관련 상담과 건강, 가사 서비스 등, 주민의 고령화에 수반하여 필요로 요구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 결과로부터 A지구에서는 고령화의 심각화와 저소득층의 집중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수반하여 지역이 다양한 과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화대책 관련 사업법이 효력을 상실한 현재, 이들 지역의 과제와 필요에 대한 대응을 행정에 요구해 가는 것만으로는 현실적이지 않고, 공조(公助)에 더하여 지역 주체의 대응, 즉 공조(共助)와 자조(自助)를 아우른 새로운 지역지(地域知)로서의 ‘공치(共治=거버넌스)모델’이 필요하다.

현재, 시내 3지구 공동의 마을만들기 연구회(사무국: 오사카시립대학 도시연구플라자 전홍규 연구실)에서는 이들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공동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커뮤니티개발회사)’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현재 지구 내에는 빈 터와 빈 건물이 산재해 있다. 이들 지역 자원을 향후의 공생형 마을만들기의 실현을 향해 조사함과 더불어 각 자원을 연계시키는 형태로 지역의 마을만들기를 추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각 지구에는 시내의 유력 대학이 인접해 있어 이들 지역 자원의 활용 방법 등에 관해서는 인접한 대학과 연계해 가면서 공조 체재를 꾀해 갈 필요가 있다.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인적자원을 지역에 환류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순환 구조를 앞서 언급한 커뮤니티개발회사가 담당해 감으로써, 커뮤니티 주체의 지역 개발의 방향성을 모색해 가는 것이 향후 지역재생에 대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때, 물리적인 지역 재생만이 아니라 본 논문에서 지적해 온 다양한 지역의 필요에 대응해 가는 새로운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도구로서 커뮤니티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 가는 것도 시도해 갈 필요가 있다. 그러한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지역의 무장애화를 더 한층 추진해 가는 것과 지역 내외의 주택의 수리, 관련된 거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기업, 고령자와 사회적 약자의 안정적인 지역 거주를 위한 정주 지원을 향한 서비스 지원형 주택(supportive housing) 공급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 등,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필요에 대응해 갈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기업의 전개가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Arthurson, K. and K. Jacobs (2003), “A Critique of the Concept of Social Exclusion and its Utility for Australian Social Housing Policy”, *UK Housing Studies Association Conference of Australian Housing and Urban Research Institute*.
2. Atkinson, R. and K. Kintrea (2001), “Disentangling Area Effects: Evidence from Deprived and Non-deprived Neighbourhoods”, *Urban Studies*, 38(12): 2277~2298.
3. Atkinson, R. and K. Kintrea (2002), “Area Effects: What Do They Mean for British Housing and Regeneration Policy?”, *European Journal of Housing Policy*, 2(2): 147~166.
4. Atkinson, R. and K. Kintrea (2004), “Opportunities and Despair, It’s All in There: Practitioner Experiences and Explanations of Area Effects and Life Chances”, *Sociology*, 38(3): 437~455.
5. Bauder, H. (2002), “Neighbourhood Effects and Cultural Exclusion”, *Urban Studies*, 39(1): 85~93.
6. Berman, Y. and D. Phillips (2000),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and social exclusion at national and community level”, *Social Indicators Research*, 50: 329~350.
7. Brooks-Gunn, J., G. Duncan, G., P. Klebanov and N. Sealane (1993), “Do neighbourhoods influence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2): 353~395.
8. Ellen, I. and M. Turner (1997), “Does neighbourhood matter? Assessing Recent Evidence”, *Housing Policy Debate*, 8(4): 833~866.
9. Kempen, E. Van (2002), “Poverty pockets’ and social exclusion: on the role of place in shaping social inequality”, *States and Cities* (P. Marcuse and R. Van Kempen e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40-257.
10. Kleinman, M. (1998), “Include Me Out? The New Politics of Place and Poverty”, *CASE Paper11*, London School of Economics.
11. Kleinman, M. (1999), “There goes the neighbourhood: Area policies and social exclusion”, *New Economy*, 6(4): 188~192.
12. Lee, P. (1998), “Housing policy, citizenship and social exclusion”, *Housing and Public Policy: Citizenship, Choice and Control*(A. Marsh and D. Mullins(eds)),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57~78.
13. Murie, A. and S. Musterd (2004), “Social Exclusion and Opportunity Structures in European Cities and Neighbourhoods”, *Urban Studies*, 41(8): 1441~1459.
14. Murray, C. (1996), “The emerging British underclass”, *Charles Murray and the Underclass: The Developing Debate*(R. Lister ed.), London: IEA Health and Welfare Unit, 24~53.
15. Power, A. (2000), “Poor Areas and Social Exclusion”, *Social Exclusion and the Future Cities*(Power & Wilson), *CASE paper 35*, Lond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1~20.
16. Social Exclusion Unit (2001), *A New Commitment to Neighbourhood Renewal: National Strategy Action Plan*, London: Cabinet Office.

17. Somerville, P (1998), “Explanations of Social Exclusion: Where Does Housing Fit in?”, *Housing Studies*, 13(6): 761~780.
18. Speak, S. and S. Graham (1999), “Service Not Included: Private Services, Restructuring, Neighbourhoods and Social Marginalis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31: 1985~2001.
19. Walker, A. and C. Walker (1997), *Britain Divided: The growth of social exclusion in the 1980s and 1990s*, London: CPAG.
20. Webster, D. (1999), “Targeted local jobs: the missing element in Labour’s social inclusion policy”, *New Economy*, 6(4): 193~198.
21. Wilson, J. W. (1987), *The Truly Disadvantaged: The Inner City, the Underclass, and Public Polic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平川茂, 牛草英晴 訳 (1999), 「アメリカ의 언더클래스 : 本當に不利な立場に置かれた人々」, 明石書店).
22. Wilson, J. W. (1996), *When Work Disappears: The World of the New Urban Poor*, New York: Knopf. (川島正樹, 竹本友子 訳 (1999), 「アメリカ大都市의 貧困と差別 : 仕事がなくなるとき」, 東京: 明石書店).
23. Xavier de Souza Briggs (1998), “Brown Kids in White Suburbs: Housing Mobility and the Many Faces of Social Capital”, *Housing Policy Debate*, 9(1): 177~221.
24. 谷富夫編 (2008), 「新版 ライフヒストリーを学ぶ人のために」, 世界思想社.
25. 全泓奎 (2015), 「包摂型社会 : 社会的排除アプローチとその実践」, 法律文化社.